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코오롱베니트(주)
- 대상물품명 : Cohesity Veritas NetBackup Flex Appliance 5372HA 300TB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00,00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6월 30일

발주기관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조사명(공급사)

코오롱베니트(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문 서 번 호 : SS-2026-06-26-01

발 행 일 자 : 2026년 06월 26일

수 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 업 명 :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물 품 명 : AI Server - G494-SB1 1대 이전설치, NVIDIA H200 NVL 141GB PCIe

제1조(목적)

이 협약은 「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서버 제조사 및 GPU 공급사로
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대상 서버의 안전한 이전 설치, 부품(GPU) 공급 및 이에 수반되는 기술지원을 원활
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장비 이전 설치, 물품 공급 및 현장 기술지원에 한해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
- ② “제조 및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업무 범위는 제조사로서 사전 협의된 대상 장비(G494-SB1)
의 물리적 운송 및 이전 설치를 수행하고, 공급사로서 신규 물품(NVIDIA H200 NVL)의 현장 증설 및 대상 시
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지원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업무 범위 및 기술지원 수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범위에 따른 “제조 및 공급사”의 이전 설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금액은 물품 대금,
작업의 난이도 및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 및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70,00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 및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이전 설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협의하고, “제조 및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6월 26일

“발주기관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 슈퍼솔루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27-32 대륭테크노타운 12차 1305호 TEL:02)715-1588 / FAX : 02)715-0430

- 사 업 명 :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 조 사 : 주식회사 이슬림코리아
- 대상물품명 :
 - nSIMS 통합로그 서버 메모리 증설 (192GB 메모리증설_2식 / 224GB 메모리 증설_2식)
 - 관세청 빅데이터 서버 SSD 7.68TB x 2ea 증설 2식
 - 조달청 업무지원 서버 10G 2port x 2ea 증설 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공급사의 물품공급,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71,200,000원 (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7월 01일

발주기관명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조사명(공급사) : (주)이슬림코리아 대표이사 윤 영 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 대상 물품명 : GPU카드 증설 2식
 - 클라우드 인프라 S2존 TG4250 H4 H200 4장(Nvlink 포함)
 - 클라우드 인프라 S2존 TG4250 H4 H200 3장(Nvlink 포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GPU 카드(H200) 증설 도입의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합의하는 금액 651,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합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6 월 30 일

“발주기관명”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 대상 물품명 : 정부24 내장디스크 증설 TNS-2100 x86서버 4식
- 서버 당 각 신규 디스크 2TB * 2장 (RAID 1, Usable 2TB)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정부24 내장디스크 증설 도입의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7,6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합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7 월 15 일

“발주기관명”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키미데이터
- 대상물품명 : BR G620 증설
 - 12포트 이상 라이선스 및 모듈 일체
- BR X6-8 증설
 - SAN스위치(나급) 공통규격 세부사항 외 1. 48Port로 기존장비(BR X6-8과) ISL 구성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공급사의 물품공급,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합의하는 금액 313,50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구분		품명 상세내역
1	BR G620 증설	XBR-G6MIDR12PTPOD-32G * 1EA
2	BR X6-8 증설	Brocade X7-4 48P * 1EA

2026년 6월 29일

발주기관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조사명(공급사)

(주)키미데이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키미데이터
- 대상물품명 : BR G620 증설
 - 12포트 이상 라이선스 및 모듈 일체
- BR X6-8 증설
 - SAN스위치(나급) 공통규격 세부사항 외 1. 48Port로 기존장비(BR X6-8과) ISL 구성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공급사의 물품공급,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13,50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구분		품명 상세내역
1	BR G620 증설	XBR-G6MIDR12PTPOD-32G * 1EA
2	BR X6-8 증설	Brocade X7-4 48P * 1EA

2026년 6월 29일

발주기관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조사명(공급사)

(주)키미데이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6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 대상 물품명 : M9148T-PL8=*2, DS-X9648-1536K9=*1, DS-SFP-FC32G-SW=*6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55,326,45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7월 17 일

"발주기관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 대상 물품명 : Hitachi Vantara VSP E1090 235TB, Hitachi Vantara VSP E1090 115TB 증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765,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6월 30 일

"발주기관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갑)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한국오라클(유)의 공식 총판 (주)터틀날리지
- 대상 물품명 :
 - ①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DBMS) - 32 Processor License
 - ②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s (RAC) - 32 Processor License
 - ③ Partitioning - 32 Processor License
 - ④ Oracle Exadata Storage Server Software (HC License) - 54 ea
 - ⑤ Exadata Database Machine X11M Quarter Rack + X11M-Z 증설 추가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100,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7월 14일

"발주기관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터틀날리지

